

예방접종관리법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22일, 한지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지아의원)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함.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제정안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규율체계로는 예방접종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예방접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본개

획 및 예방접종위원회 도입을 통한 정책체계 구축, 예방접종약품의 지정·구매·비축·생산·수입보고 등 공급망 관리체계 개편, 예방접종 통합 정보관리 강화, 피해보상 재심사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기획부터 국가보상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방접종을 감염병 및 감염을 매개로 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까지 확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관리체계 구축, 예방접종 기록 및 접종력 관리의 통합성 확보,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감염병예방법」에서 이관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승계·보완하고 새로 추가되는 규정은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제정안의 상이한 내용은 정책 효과, 국민의 권리·의무 및 행정 부담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되,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률과의 정합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